「e-파트너 정기예금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1. 개정시행일: 2016. 6 .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「e-파트너 정기예금 특약」(구 외환은행) **제1조 적용범위** e-파트너정기예금(구 외환은행)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' 및 '거치식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', '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(구 외환은행)'을 적용합니다.. **제2조 ~ 제10조** (내용생략) **제11조 갱신** ①이 예금은 예금주가 만기일 이전에 갱신 신청하는 경우 최장 10년 이내에서 만기일(휴일인 경우는 다음 은행 영업일)에 자동갱신 처리합니다. 단, 세금우대,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한 후 갱신 당시 한도 초과된 경우와 압류 등 법적지급제한이 있는 계좌는 갱신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② 만기일 이후에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②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갱신 처리합니다. ③ 갱신된 예금의 이자는 갱신된 날을 예금일로 하여 제8조에 따라 적용 이율을 정합니다. .	**「e-파트너 정기예금 특약」(구 외환은행)** **제1조 적용범위** e-파트너정기예금(구 외환은행)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예금거래 기본약관' 및 '거치식예금약관', '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'을 적용합니다. **제2조 ~ 제10조** (좌동) . (삭제)	기본약관통일에 따른 용어 정비 통합전산 반영에 따른 갱신조항 삭제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